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등 〉

■ 신동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48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2
2. 스포츠윤리센터의 피해자 지원 및 피신고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6
3. 스포츠윤리센터의 문체부장관에 대한 징계 재심의 요구 요청권 ...	9
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통계 작성·관리 의무	12
5. 국민체육진흥기금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 지원 등 추가 ...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신동욱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4. 9. 24.
3. 회 부 일: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희롱·성폭력, 폭행, 따돌림 등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단체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의3 신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의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 <u>체육계 인권침해</u> ”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 체육과 관련된 시간·공간·관계 속에서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u>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 행위</u> 나. <u>성희롱·성폭력 등 성적인 폭력 행위</u> 다.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침해 행위</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됨.¹⁾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장관의 감독을 받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2023년 기준 총 1,662건의 상담과 630건의 신고 접수²⁾, 609건의 사건 조사 중 137건의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2) [연도별 사건 신고·상담 접수현황]

(‘20.9.2.~’24.7.31., 단위: 건)

	구분	인권침해					비리						단순문의 등	합계
		성폭력 성희롱	폭력	그 외 인권 침해	기타	소계	조직 사유화	횡령 배임	승부 조작	입시 비리	기타	소계		
2020	상담	14	38	30	159	241	2	5	4	2	35	48	7	296
	신고	4	22	10	4	40	14	14	3	1	29	61	0	101
2021	상담	50	171	149	36	406	10	34	13	6	330	393	230	1,029
	신고	23	68	59	6	156	9	19	7	0	180	215	0	371
2022	상담	71	216	261	8	556	63	64	55	6	280	468	351	1,375
	신고	31	102	79	0	212	20	27	12	2	181	242	0	454
2023	상담	87	259	279	43	668	97	126	100	5	438	766	228	1,662
	신고	49	107	101	5	262	44	57	24	0	243	368	0	630
2024	상담	59	171	151	43	424	94	67	56	4	198	419	327	1,170
	신고	32	80	70	21	203	64	34	28	2	108	236	0	439
총계	상담	281	855	870	289	2,295	266	296	228	23	1,281	2,094	1,143	5,532
	신고	139	379	319	36	873	151	151	74	5	741	1,122	0	1,995

자료: 문체부

징계요청 등을 수행하였음³⁾.

그럼에도 체육인 인권보호 등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건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는바 개정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현행법 제18조의3제3항제1호 각 목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관한 예시가 있는바⁴⁾, 「국가인권위원회법」⁵⁾ 등을

3)

[연도별 사건 처리현황]

(‘20.9.2.~’24.7.31., 단위: 건)

연도	처리완료										
	징계요청	수사의뢰	감사의뢰	기관경고	기각	각하	취하	권고	직권조사	이송	합계
2020	3	1	0	0	2	6	5	0	0	0	17
2021	46	9	1	2	14	51	103	5	0	0	231
2022	69	6	3	13	36	101	159	10	1	0	398
2023	137	4	1	11	116	107	210	21	0	2	609
2024	103	2	1	4	93	94	122	8	0	0	427
소계	358	22	6	30	261	359	599	44	1	2	1,682

*자료: 문체부

4) 「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7. “군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참고하여 정의 규정은 보다 간결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문체부도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은 공감하나, ‘인권침해’의 정의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경우 체육인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권’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⁶⁾.

6) <문체부 수정안>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

2. 스포츠윤리센터의 피해자 지원 및 피신고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조치에 사용되는 비용을 피신고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생략)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신설>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신설>	2. 일시보호
<신설>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신설>	③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피신고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조치 절차, 제3항에 따른 상환청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피신고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안 제18조의7제2항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18조의3제3항에 이미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으로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등이 명시되어 있고⁷⁾,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 보호조치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실익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

7)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 8. 18., 2022. 1. 18.>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상담(제10조) 및 보호시설(제12조) 운영, 통합지원센터(제18조) 운영, 의료비 보조제도(제28조) 등이 시행되고 있음(문체부)

[표] 스포츠윤리센터의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연도	예산	주요내용(실적)
'21년	54백만원	의료 18회, 법률 14회, 정서심리 27회, 임시주거 2회 등 총 61회
'22년	90백만원	의료 11회, 법률 16회, 정서심리 34회, 체육활동 5회 등 총 66회
'23년	103백만원	의료 16회, 법률 25회, 정서심리 29회, 체육활동 3회 등 총 73회 지원

*세부사업 '스포츠윤리센터 운영(5261-321)' 중 '스포츠윤리센터 사업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안 제18조의7제3항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⁹⁾,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신고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대상은 범죄경력이 확인된 성범죄행위자라는 점¹⁰⁾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9)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스포츠윤리센터의 문체부장관에 대한 징계 재심의 요구 요청권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② (생략) <u><신설></u>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체육단체에게 재심의를 할 것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문체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으로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함.¹¹⁾

일례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등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책임자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¹²⁾).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 요구를 문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1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 및 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대한체육회 규정) 제1조(설치근거)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43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선수: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심판: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출전정지

문체부장관에게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재심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문체부장관은 징계 요구와 체육단체의 징계 결과가 상이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결과가 징계 요구한 징계사유의 양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재검토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된 2020년 이래로 377건의 징계요구 중 체육단체가 징계 조치 결과조차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43%(162건)에 달하는바,

개정안은 징계 재심의 요구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 및 체육단체의 미보고 현황

	2020 (9.2.~)	2021	2022	2023	2024 (~8.31.)	계
징계요구*(건)	3	46	69	137	122	377
미보고(건)	0	2	9	54	97	162

*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요구한 경우는 0건으로, 모두 윤리센터의 요청에 의한 징계요구임.

** ('20.8월~'24.4월) '중징계 사유'로 징계 요구한 188건 중 조치 결과가 경징계 33건(18%), 미회신 64건(34%) (중징계 사유: 폭력, 성폭력·추행·희롱, 인권침해, 괴롭힘, 승부조작, 편파판정, 입학비리, 선거관련 비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스포츠윤리센터의 문체부장관에 대한 징계 재심의 요구 요청권이 실효적
이기 위해서는, 문체부장관의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재심의 요구권, 체육
단체의 징계 재심의 처리기한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보완될 필요가 있겠음.

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통계 작성·관리 의무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경우 문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18조의16제2항 등).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스포츠윤리센터는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¹³⁾, 개정안은 제도적 보완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실태조사 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 실태조사 활용성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3)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 국민체육진흥기금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 지원 등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11호의4 부터 제11호의7까지 신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 ----- -----.
1. ~ 11의3. (생략)	1. ~ 11의3. (현행과 같음)
<u><신설></u>	<u>11의4.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u>
<u><신설></u>	<u>11의5.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연구·조사</u>
<u><신설></u>	<u>11의6.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대응 활동과 관계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u>
<u><신설></u>	<u>11의7.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그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다만, 개별 사업은 이미 현행법상 근거를 두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개정실익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표] 개정 내용의 현행법상 근거 조문

개정 내용	현행법상 근거 조문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제11호의4)	기금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지원 (제22조제1항제10호), 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수행 (제18조의3제3항제5호)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제11호의5)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대응활동과 관계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11호의6)	기금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지원 (제22조제1항제10호), 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수행 (제18조의3제3항제6호)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제11호의7)	기금으로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피해자 지원’ 지원 (제22조제1항제11호의3)
	기금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지원 (제22조제1항제10호), 센터는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수행 (제18조의3제3항제2호)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 1] 유사 법률안 발의 현황

개정 항목	김선교 의원안 (2201172)	황희 의원안 (2202908)	진종오 의원안 (2203934)	신동욱 의원안 (2204248)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신설)	-	-	-	인권침해 유형 나열 (제2조제11호의3)
체육계 폭력 방지 위한 현장점검 관련 관계기관 협조 요청 권한(신설)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제18조의2제3항)	-
체육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청 권한(신설)	-	-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 제외)가 없으면 협조 (제18조의2제5항)	-
인권감시관 명칭 변경	-	-	인권보호관 (제18조의3제3항제4호)	-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 신고자 비밀보장 예외 (신설)	① 예외 조항 신설,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 가능 (제18조의4제3항 단서)	-	① 예외 조항 신설,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 가능 (제18조의4제3항 단서)	-
	② 예외 조항 신설,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윤리센터 등 종사자 직무상 비밀 누설, 자료 제공 가능 (제18조의10제3항 단서)	-	② 예외 조항 신설,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윤리센터 등 종사자 직무상 비밀 누설, 자료 제공 가능 (제18조의10제3항 단서)	-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	-	스포츠윤리조사원 (제18조, 제18조의3~5, 제18조의7~10, 제22조, 제46조의3)	-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이의신청 절차(신설)	-	조사의 절차·내용· 결과에 대해 당사자 이의신청 가능 (제18조의5제7항·제8항)	-	-
윤리센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신설)	-	-	-	①피해자에 대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 조치 가능 ②피신고인에게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제18조의7제2항~제4항)
문체부장관의 징계 관련 권한 (신설)	-	-	현행 징계요구 외에, 권고·시정명령권 부여 (제18조의9제2항)	-
	조치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요구 가능 (제18조의9제3항)	-	-	-
	-	조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 가능 (제18조의9제4항)	-	-

개정 항목	김선교 의원안 (2201172)	황희 의원안 (2202908)	진종오 의원안 (2203934)	신동욱 의원안 (2204248)
	-	-	-	조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 요청 가능 (제18조의9제3항)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관련 권한(신설)	-	-	문체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윤리센터→체육단체 직접 조치요구 가능 (제18조의9제4항 단서)	-
체육단체 징계요구 시 중·경징계 구분(신설)	-	-	대상·경중에 따른 징계 유형 나열 (제18조의9제4항)	-
기한 내 조치요구 결과를 미보고한 체육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과 근거(신설)	-	-	보조금 지급, 평가 등에 불이익 (제18조의9제5항)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권한(신설)	-	-	-	특별한 사유 없으면 협조, 실태조사 통계 작성·관리 (제18조의16제3항~제5항)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신설)	-	-	-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예방대응활동 관련 교육·훈련, 연구조사, 상담 및 법률 지원 (제22조제1항 제11호의4~7)